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74
----------	-----

2021. 11. 30.(화)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1월 23일

-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2021. 7. 13.)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규정(안 제3조)
-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안 제4조)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12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 규정(안 제13조 ~ 제26조)
  - 보조금 예산의 통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교부신청
  - 교부방법, 지방보조사업 신고, 실적보고, 운용평가
  - 중요재산의 보고 및 부기등기,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그동안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에 따라 운영되었으나,
  -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시행 '21. 7. 13.)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및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도 내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 보조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법 제4조제1항1)에,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것에 따른 것임.

- 즉, 현행 조례에서는 기준보조율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20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음.

- 현행 도비 보조금 기준보조율의 범위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최하 20%에서 최대 50%(※ 도 주관 통계조사, 지방도로 관리, 지방하천 유지 관리사업은 도비 100%임) 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개정안에서 60%까지 범위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1. 참조>

-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기준보조율을 정할 때,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기준보조율의 범위(20~60%)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제외하여, 기준보조율 지정권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귀속 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p>제15조(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① 시·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u>기준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3조(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u>기준보조율은 20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u></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수행근거·성격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 **안 제4조**는 예산 계상 신청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도 전액 보조사업, 재난, 재해 발생 등에 따른 교부 사업, 도 주요 시책 추진 사업 등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법 제5조제2항<sup>2)</sup>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음.
  
-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위원회 명칭을 현행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 위원회 구성, 임기 등은 현행 조례와 유사하게 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자격에 대한 사항만 구체화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 제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현행	개정안
<p>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lt;개정 2015 .7. 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직 위원 :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li> <li>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서,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li> </ol>	<p>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li> <li>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li> <li>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li> <li>4.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li> <li>5.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 그 밖에 위원회 기능,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법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따라 규정되었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법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14조는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5, 16, 17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는 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8조는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법 제12조 제1항제4호<sup>3)</sup>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23조 및 제24조는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표·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등)의 취득 시 15일 이내에 보고하고, 매년 6월 및 12월에 변동 현황을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보조금으로 취득 또는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 표기하도록 하였음.
- 안 제25조는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부칙은 일반적 경과조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통해 조례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고, 법 개정 및 본 개정안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포함하였음.

---

3)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13) 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지방보조금 관련사항이 법령으로 통합 규정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 조례 내용을 전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근간으로 일부 보완하여 개정안에 반영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3조 중에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20%부터 60%까지로 규정한 이유와 기준보조율 규정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1.>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4조 관련)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1	무상급식 지원	30	40	
2	도 주관 통계조사	100		
3	도·시군 공동 통계조사	20	30	
4	도민정보화 진흥 사업	20	30	
5	공무원 사기양양 시책 사업	정액		
6	예비군 육성	20	30	
7	거주외국인(새터민) 보호	30	40	
8	자원봉사센터 지원	20	30	
9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50		
10	민방위 교육	30	40	
11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20	30	
12	일자리창출 지원	20	30	
13	기업유치활동 지원	정액		
14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정액		
15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정액		
16	대중교통 육성 지원	20	30	
17	경관 조성사업	20	30	
18	지방도로 관리	100		
19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	100		
20	재난예방 및 복구	30	40	
21	토지정보 확충 사업	20	30	
22	농촌 정주여건 개선	20	30	
23	지역 특화사업 육성	20	30	
24	정예농업인 양성	20	30	
25	친환경 농업 육성	20	30	
26	식량작물 육성	20	30	
27	농업생산기반 조성	20	30	
28	농산물 수출진흥 사업	20	30	
29	지역특화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0	30	
30	농산물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30	40	
3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0	30	
32	축산물 경쟁력강화 사업	20	30	
33	가축방역 사업	20	30	
34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20	30	
35	내수면어업 활성화	20	30	
36	산림자원 조성	20	30	
37	산림환경 보호	20	30	
38	일반 사회복지 지원 사업	30	40	
39	저소득층 지원 사업	30	40	
40	청소년 건전 육성	20	30	
41	보육서비스 지원	30	40	
42	건강가정 육성	20	30	
43	여성 권익증진 사업	20	30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44	여성 인적자원 개발	20	30	
45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30	40	
46	노인 복지 지원	30	40	
47	장애인 복지 지원	30	40	
48	인공면역 획득사업	20	30	
49	종교·문화원·향교 지원	20	30	
50	문화유산 보존 사업	30	40	
51	문화인프라구축 및 콘텐츠 육성	20	30	
52	문화시설 운영 지원	정액		
53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30		
54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	20	30	
55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20	30	
56	시군 체육행사 지원	30		
57	시군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정액		용지매입비 제외
58	맑은물 공급사업	20	30	
59	소방시설 신·증축	30	40	용지매입비 제외
60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정액		
61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	정액		
62	아동급식 확대 지원(학기중)	정액		
63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20	30	
64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정액		
65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정액		
66	누리과정 운영 지원	정액		
67	출산장려 사업	20	30	
68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20	30	
69	태양광산업 육성	정액		
70	산업자원 안전 관리	20	30	
71	농업인 복지 증진	30	40	
72	지역특화작목 육성	30	40	
73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20	30	
74	산림경영 지원	20	30	
75	생태환경 산지 관리	20	30	
76	시군 문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정액		용지매입비 제외
77	시군 축제 지원	30		
78	관광자원 개발 사업	정액		
79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20	30	
80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20	30	
81	대기환경 개선	20	30	
82	지역개발 촉진	20	30	
83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정액		
84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정액		
85	한방바이오 R&D 강화	20	30	
86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20	30	
87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20	30	
88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	20	30	
89	기능성 양잠농가 활성화	20	30	

연 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 고
		청 주 시	기타시 군	
90	그 밖에 도와 시·군 상호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군 고유사무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 보조		

<참고자료2.> 2020, 2021년 국비·도비 보조금 현황(시군별)

<2020년>

(단위 : 백만원)

시군별	계	국 고 보조금	도 비 보조금
계	4,241,332	3,334,041	907,291
도분청	429,995	374,347	55,648
시군계	5,747,186	2,959,694	851,643
청주시	1,277,920	1,035,161	242,759
충주시	548,830	437,997	110,833
제천시	394,047	307,176	86,871
보은군	183,600	133,005	50,595
옥천군	201,119	154,479	46,640
영동군	223,795	171,700	52,095
증평군	110,747	76,428	34,319
진천군	215,672	158,815	56,857
괴산군	205,595	145,645	59,950
음성군	303,877	231,135	72,742
단양군	146,135	108,153	37,982

<2021년>

(단위 : 백만원)

시군별	계	국 고 보조금	도 비 보조금
계	4,586,763	3,609,136	977,627
도분청	485,040	435,938	49,102
시군계	4,101,723	3,173,198	928,525
청주시	1,293,864	1,007,177	286,687
충주시	584,598	475,909	108,689
제천시	454,216	345,555	108,661
보은군	171,279	126,418	44,861
옥천군	215,223	168,902	46,321
영동군	232,699	187,949	44,750
증평군	116,790	83,965	32,825
진천군	244,204	183,629	60,575
괴산군	231,598	173,700	57,898
음성군	357,314	254,622	102,692
단양군	199,938	165,372	34,566

※ '20년: 연도말 기준, '21년: 21.10월말 기준

<참고자료3.>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시(도, 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조례(안)

○○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군·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보건·사회: 00퍼센트부터 00퍼센트까지
2. 문화·체육: 00퍼센트부터 00퍼센트까지
3. 일반행정: 00퍼센트부터 00퍼센트까지

⋮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1.
- 2.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公募)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1.
- 2.

②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 2.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분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실장

2. ○○국장

3.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前任)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00. 0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참고자료4.> (현행)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충청북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과 시·군에 교부하는 자금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라 함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라 함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제4조(보조대상 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③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0>
-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장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

1. 당연직 위원 :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서,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단,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9. 29>

1.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3. 삭제<2017. 9. 29>

4. 삭제<2017. 9. 29>

5. 삭제<2017. 9. 29>

6. 삭제<2017. 9. 29>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으며,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3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시·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① 시·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실·국·본부·원장·사업소장·출장소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지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명세를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17조(교부결정)**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용도 및 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해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 등의 경영실태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법인·단체 및 개인의 보조사업자로 한정한다.

**제18조(교부조건)**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부담 비율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에 대한 비율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 및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21.4.9.>

**제25조(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 및 교부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정산검사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 도지사가 정하는 형식의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용의 공시)**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②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7. 11. 10>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5.20. 조례 제456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4
----------	-----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2021. 7. 13.)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규정(안 제3조)
-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안 제4조)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12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 규정(안 제13조 ~ 제26조)
  - 보조금 예산의 통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교부신청
  - 교부방법, 지방보조사업 신고, 실적보고, 운용평가
  - 중요재산의 보고 및 부기등기,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20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수행근거·성격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도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장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심의 시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 사업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은 직무대행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도지사가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적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

제13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지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후

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명세를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도지사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4.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확보 여부
6.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7.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 및 중요재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교부결정 등)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통지, 교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7조(교부방법)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긴급 또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나누어 교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2.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3. 그 밖에 법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경미한 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

제20조(실적보고 등)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확정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1조(운용평가)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의 운용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의 보조금을 전년도 교부액보다 감액하여 예산에 계상하거나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도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10년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기계, 장비 : 5년
5. 그 밖의 중요재산 :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중요재산에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③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또는 사정변경 등”을 “등”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를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로 한다.

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를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로 한다.

⑥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지방재정법」 ”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관련 법령 발취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신청'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22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전 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9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 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실적보고서의 검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지급
2. 당초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최소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을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21.7.13.)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출석 및 안전심사수당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 3. 관련조문

- 안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25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도지사는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비용은 지속발생 예상, 추계는 5년('22~'26)에 대하여 실시
- 지급단가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의 단가 적용
  - 출석수당은 2시간 초과, 안전심사는 100쪽~300쪽이내 단가 적용
  - 포상금은 '21년도 예산편성금액으로 산출

#### 나. 추계결과

- 산출과정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회 개최 소요비용 : 16,560천원
    - 출석수당 : 12명\*연6회\*130,000원 = 9,360천원
    - 안전심사수당 : 12명\*연12회\*50,000원 = 7,200천원
  - 신고포상금 : 9,000천원\*연1회=9,000천원
- 산출결과 : 연간 25,560천원, 2022년부터 5년간 127,800천원 소요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b>세출</b>	127,800	25,560	25,560	25,560	25,560	25,560
출석 및 안전심사수당	82,800	16,560	16,560	16,560	16,560	16,560
신고포상금	45,000	9,000	9,000	9,000	9,000	9,000

###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김수인